"가치있는 삶의 주체로 키워가는 희망꿈터"

[2021. 10.]

SW복지재단「성우보육원」

시설 개방 운영 지침

CHILDREN CENTER

사회복지법인
SW복지재단 성우보육원

성우보육원 시설 개방(공유) 운영 지침

[2010. 10.]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성우보육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지역주민(기관)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기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원내 행사,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원내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수칙) ① 원내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기관)이 원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일몰 후 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내 시설의 관리 및 재원아동, 직원 등 안전을 고려하여 원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원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재원아동의 원내 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제5조(유지관리)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한계)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내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원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별표 1] 시설개방사업 안내
[별표 2] 개방시설 이용수직
[별표 3] 개방시설물의 범위 및 시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별표 1]

「성우보육원」 시 설 개 방 사 업 안 내

(개방시설물의 범위) 개방시설물의 범위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이용제한) ① 개방시설물의 이용제한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우보육원의 자체 행사
2. 시설공사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에서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 이용시기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제한 할 수 있다.

1. [별표2] 개방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자(기관)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관)
3. 성우보육원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기관)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된 자(기관)

(이용자의 사용방법)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기관)은 전화, FAX, 전자우편 등으로 시설 이용을 신청한 후 관련기준에 합당할 때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 방명록에 등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 042-627-6800
2. FAX. 042-626-1377
3. e-mail. sw6276800@hanmail.net

[별표 2]

「성우보육원」 개 방 시 설 이 용 수 칙

우리 성우보육원은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기관 및 지역주민(기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시설을 개방합니다. 이에 보육원 개방시설 주민(기관)은 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음 수칙을 준수합시다.

1. 이용자(기관)는 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이용자(기관)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이용자(기관)는 성우보육원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4. 이용자(기관)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 이용자(기관)는 개방시설 이용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 강당 이용시 주의사항 - 음향장비 임의조작, 이용 후 원래 정위치 등...

아동양육시설 성우보육원장

[별표 3]

개방 시설물의 범위 및 시간표

개방시설	개방 용도	개방 대상자	개방 가능 일시
강당 (30인 이상)	교육용	학생, 일반인 지역기관	주중 09:00 ~ 16:00 토.일,공 10:00 ~ 17:00
도서실 (10인 이하)	도서열람	학생, 일반인	주중 09:00 ~ 16:00 토.일,공 10:00 ~ 15:00
운동장	체육활동	학생, 일반인 지역기관	주중 09:00 ~ 17:00 토.일,공 10:00 ~ 16:00
키즈카페 (10인 이하)	영유아 놀이	영유아 (미취학)	평일 09:00 ~ 17:00 토.일,공 10:00 ~ 16:00

- 학생의 기준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의 주민.
- 일반인의 기준 : 학생 외의 자.
- 지역기관의 기준 : 인근 복지기관(노인, 장애인, 쉼터 등) 및 공공기관

[별지 제1호서식]

「성우보육원」 시 설 이 용 신 청 서

신청자(기관)		연 락 처	
주 소			
신청 일시	20 년 월 일 ( ) :		
이용 장소	□ 강당 □ 도서실 □ 키즈카페 □ 운동장		
이용 인원			
이용 사유			
기타 (협조요청)	ex) 음향장비 준비, 축구공 대여 등		

이용(행사 등) 개요		
제 목	내 용	소요시간

위와 같이 보육원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검토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 : (인)